

승재현의 형사판

-형사법 전문가의
판결 되짚어 보기-

20개월 여아 성폭행 살해, 장모에 음란 문자... 그놈 신상공개 가능할까

이번 주 독자들의 관심을 끈 판결에 관해 전문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 분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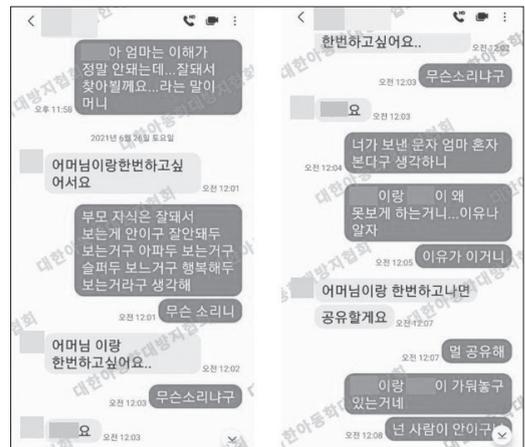


〈생후 20개월 된 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대전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14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새벽 양모(29)씨는 대전시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20개월 된 딸을 이불로 덮고 무자비하게 때렸다. 양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아이를 향한 폭행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양씨는 아이가 숨지자 친모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보름이 넘도록 숨겨뒀다. 아이 외할머니의 신고

를 받은 경찰이 부패한 아이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양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양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씨는 “양씨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당일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따라 양씨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20개월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범행 2주 후 장모에게 보낸 문자 일부〉

29일에는 딸과 통화가 되지 않자 연락한 장모를 향해 양씨가 “어머님이랑 한번 하고 싶어요.”라고 음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양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 신상공개는 언제 가능한가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고,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신상 공개가 되는 건가요?

일단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살인, 인신매매, 강간,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에 대해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 밖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신상을 공개할 수 없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신상공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②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며 ③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④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신상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⑤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합니다.

경찰이 다섯 가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다음엔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심의위에서 신상 공개 결정을 내린 후에도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신상 공개가 이뤄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공범 ‘부파’ 강훈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

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훈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 굉장히 복잡하군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이 중요해지고, 피의사실 공표 역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피의자 신상 정보 공개는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중요한 건 피의자 인권 존중과 더불어 피해자 보호도 반드시 존중되어야겠죠.

◇ 재판을 받고 있는 양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법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동안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하도록 하는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면 됩니다. 양씨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니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된 셈입니다. 다만 재판부의 명령 전에 꼭 검찰의 요청이 있어야 합니다. 오는 10월 검찰의 구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양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요청도 이뤄져야 하는 거죠. 이후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텐데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이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던 만큼 재판부의 올바른 결정을 바랍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출처/조선일보)